고양시 공고 제2026-1호

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(안)

「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의거 “고양시 일산동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” 구성을 위한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.

2026. 6 . .

일 산 동 구 청 장 (인)

1. **모집대상** : 고양시 일산동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심의위원
2. **모집인원** : 5명(남O명, 여O명)
3. **임 기** : 위촉일(2026. 8. 16.~)로부터 2년(1회 연임 가능)
4. **지원자격**
   - ○ 공고일 현재 주소를 고양시에 두고 있는 만20세 이상 성인
   - ○ 법률·복지·교통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  - ○ 공고일 현재 고양시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 · 소비자보호단체 · 고양시 직능단체 · 일반시민단체 임직원 등

   ※ 단, 동일인이 고양시청(시본청, 그 직속기관 및 사업소, 구청, 동)의 다른 위원회에 중복위촉 불가(2개까지 가능)

   ※ 덕양구, 일산동구, 일산서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중복지원 불가
5. **위원회 주요활동 사항(월2회 정기회의 참석)**
   - ○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의 타당성 검토 및 감경·부과에 관한 사항 심의
   - -「장애인 · 노인 ·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」제17조에 관한 사항
   - -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제2조2에 관한 사항

   ※ 수당(활동비): 1회 참석당 6만원
6. **접수 및 면접·발표 일정**
   - ○ **공고기간** : 2026. 6. 15.(월) ~ 2026. 6. 30.(화) 15일간
   - ○ **서류접수기간** : 2026. 6. 24.(수) ~ 2026. 6. 30.(화) 5일간
   - ○ **면접일정** : 2026. 7. 15.(예정/변동가능)
   - ○ **결과발표** : 2026. 8월 중 **선정자**에 한해 **개별통보** 예정

   ※ 면접 및 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, 개인별 면접시간·장소는 추후 통보
7. **선정방법**
   - ○ 1차 서류심사(30점), 2차 구술·면접심사(70점) 총점 100점
   - ○ 자체 심사기준에 의거 구청장이 선정 위촉
8. **신청방법**
   - ○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방문접수
     - 방문 : 일산동구청 가정복지과 장애인복지팀
       (평일 09:00~18:00, 토·일요일 미접수, 점심시간 12:00~13:00 제외)

   ※ 신청서류는 고양시 홈페이지(www.goyang.go.kr)에서 “고시/공고”란에 게재

9. 제출 서류

- 지원신청서 1부.(붙임1)
- 자기소개서 1부.(붙임2)
- 개인정보 수집·활용 동의서 1부.(붙임3)
- 주민등록 등본 1부.
- 자격증 사본(해당자에 한함)

*** 해당 자격증: 변호사, 법무사, 변리사, 사회복지사 1·2급, 행정사, 교통안전 관리사, 도로교통 사고 감정사, 교통기사**

- 경력 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
*** 법률·복지·교통 분야의 실무 경력 기간 증명서**

- 자원봉사 활동 실적 증명서(공고일 현재 기준 2년이내, 해당자에 한함)

*** 365 자원봉사 포털, VMS 등 공식 인증기관 발급 증명서**

10. 결격사유

○ 덕양구, 일산동구, 일산서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중복 위촉 불가

○ 공고일 현재 기준, 동일인이 고양시청(시본청, 그 직속기관 및 사업소, 구청, 동)의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사실이 있는 사람(2개까지 가능)

○ 피성년후견인

○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
○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○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○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○ 금품·향응수수, 불법로비, 배임·횡령 등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○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위원회 관련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
○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○ 미성년자에 대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촉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
11. 기타사항

○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, 반환하지 않습니다.

○ 제출된 서류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,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○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산동구청 가정복지과 장애인복지팀(☎031-8075-6414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○ 공고문 오인으로 인한 기재착오 또는 누락, 부적격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은 본인 책임으로 합니다.